

수수료 (제58조 관련)

1. 수수료 기준

관련 조문	대 상	수수료
법 제22조제1항	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	1만원
법 제29조제2항	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	1만원
법 제30조제1항	배아연구계획서 승인신청	1만원
	배아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신청	1만원
법 제31조제3항	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	1만원
법 제31조제4항	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 승인신청	1만원
	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신청	1만원
법 제41조제1항	인체유래물은행 허가	1만원
법 제48조제1항	유전자치료기관 신고	1만원
법 제49조제1항	유전자검사기관 신고	1만원
법 제49조의2제2항	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신청	1만원
법 제49조의2제3항	유전자검사역량 재인증 신청	1만원

2. 다음 각 목의 경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10% 인하한다.

- 가.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
- 나.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
- 다.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
- 라. 인체유래물은행 허가
- 마. 유전자검사기관 신고